

세계시민으로서 아동

Children as Global Citizens

이양희(Yanghee Lee)¹⁾

구미향(Mee Hyang Koo)²⁾

정영선(Young Sun Chung)³⁾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children in the modern era of globalization. The twentieth century sets the tone of viewing children as independent human beings, holding inherent and universal rights. Children are no longer viewed as immature beings in need of charity care, but rather ones with evolving capacities. Several important international movements are discussed : (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World Summit for Children; and (3)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Trends in the current issues ranging over children as active citizens of the global world are provided, including poverty, violence, and climate change.

Key Words : 세계화(globalization), 시민(citizen),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 현 황

1. 아동과 국제사회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상이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

을 갖는 사람들을 지구촌의 한 식구로 만들고 있다. 지식과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교통통신망은 시공간을 초월한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간의 활동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였다. 세계 사회(world society)는 개인과 사회, 국가, 기업,

¹⁾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인재개발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²⁾ 서일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³⁾ 한국사이버대학교 상담학부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anghee Lee,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53 Myeongnyun-Dong 3-Ga, Jongno-Gu, Seoul 110-745, Korea
E-mail : leeyh@skku.edu

국제기구와 같은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이 따르는 규범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이다(장준호, 2006).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선(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보편적 인류애(universal brotherhood)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같은 동서양의 고대 철학사상에 뿌리를 두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현대사회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즉 다양성과 보편성이 혼재된 미래사회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갖춘 시민의 양성은 중요한 이슈이다(김영란, 2009; 홍선희, 2006).

특히 최근 국제사회는 세계시민으로서 아동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하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시민성(citizenship)향상을 위한 리더쉽교육, 사회참여교육, 가정에서의 시민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경호, 2003; 김영란, 2009; 신용주, 2006). 이러한 움직임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부와 사회, 학교와 가정의 공조아래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과 인류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바로 아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향후 세계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존중받고 미래사회 변화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국제법으로 공포된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193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협

약으로 손꼽힌다. 많은 국가의 노력으로 아동은 최선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와 생명과 발달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으며, 성인이 만들어놓은 복지서비스를 단순히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존재로 탈바꿈하고 있다(김경호, 2003; Epstein, 2006).

상호의존적 공동체인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규범은 국제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동반한다. 2002년 5월 UN이 개최한 특별총회에서 세계의 정상들은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A World Fit for Children)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사안 중 하나는 아동과의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이 의사결정(decision making)과 역량강화(empowerment), 참여(participation), 적극적인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한다.

2. 아동과 국제사회의 위기와 대처

자국이 지닌 역량만으로 생존을 보장받았던 지난 세기는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화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21세기의 화두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어떻게 함께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것인가이다. 빈곤, 폭력과 착취, 무력분쟁, 환경 파괴가 계속되는 한 지구상에서 국제사회의 번영은 물론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현재 아동과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1)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아동의 삶

현재 아동과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빈곤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경제불황은 순식간에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에도 타격을 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켰고, 가장 취약한 대상인 아동의 복지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식료품값은 상승하면서 빈곤층의 30%는 소득의 반을 식비에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의 경우, 과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빈곤의 그림자가 아동에게 드리워지고 있다.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인력이 되었으며, 아동과 어머니의 영양결핍과 사망률은 증가하고, 아동은 발육부진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모체의 빈혈이 10-20% 증가하고, 저체중아 출산비율은 5-10% 증가하며, 아동기 발육부진의 증가는 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Unicef, 2009).

국제사회는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Unicef, 2009). 2000년 UN총회는 결의문을 통해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를 발표하였다. 2015년까지 국가의 정상들은 빈곤과 기아를 퇴치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하루에 1\$미만으로 연명하며 기아에 시달리는 아동의 수는 줄어들 것이며,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3/4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이양희, 2007; Lee, 2009).

2) 폭력과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아동

1990년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

상회담(World Summit of Children)에서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선언(The World Declaration)과 국가행동계획(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아동은 전쟁과 위협,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는데도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무력분쟁은 여전하며, 아동은 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또한 노예계약을 의미하는 국제적 아동매매와 빈곤국가에 생산기지를 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의 노동력 착취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양희, 2007). 심지어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국제사회를 위해 일하는 유엔평화유지군과 구호단체의 직원들에 의해 아동 성학대가 이루어진다는 보고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아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성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력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동의 징집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OPAC)’와 인신매매와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OPSC)’는 2002년에 발효된 후 현재 각각 129개국과 131개 국가가 비준하였다(Lee, 2008). 또한 2006년에 개최된 UN총회에서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는 법률을 모든 국가가 2009년까지 제정하고, 더 나아가 아동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Save the Children 영국지부는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특별전문위원회(UN Task Force on protection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와의 논의 후 분쟁지역 아동의 학대와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다(기독교뉴스, 2008).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합의된 원칙과 성명이 모든 국가에서 실제 행위로 이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그때 비로소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이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3) 풍요로운 환경을 누리는 아동

UN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보고한 2007년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대엔 지구온도가 지금보다 섭씨1도 상승하면서 양서류가 멸종하고, 기온이 2-3도 오르는 2050년대엔 지구생물의 20-30%가 사라지며, 기온이 3도 이상 오르는 2080년쯤에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 최근 개최된 국제기후변화과학회의(ISCCC)에서는 21세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이 18-59cm 상승할 것이라는 IPCC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지적하며 1m이상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는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세계일보, 2009).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상이변과 수자원의 고갈, 산림과 동식물의 폐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 등을 지구와 인류가 함께 숨 쉴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없다. 기후변화는 자연

재해, 질병, 물, 안전한 음식, 나무, 에너지 등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위협하고 문제의 심각성은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많은 부분의 경제활동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가장 기후 변화에 민감한 지역으로 건강관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아동발달, 건강 및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Unicef, 2007).

ISCCC에 참석한 80여 개국 2500명가량의 과학자, 경제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각국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글로벌 장기 목표(Shared Vision)는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2009). 이에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국가 중 17위에 달하는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배출량을 최소한 동결하거나 2005년대비 최대 4%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초고속성장과 개발을 지향했던 현대인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자연의 지배자로 군림하던 왕좌를 버리고 자연의 품에 안겨 그 속에서 ‘느리게 사는 삶’을 꿈꾼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발전한 지구와 인류가 공생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학적 삶의 방식이 지구 곳곳의 작은 마을에서 실천되고 있다. 아동을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마실 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Unicef, 2002)은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지켜질 것이며, 그때 비로소 아동이 살기 좋은 풍요로

운 세상이 올 것이다.

3.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힘

2002년 UN특별총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비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 후견인, 그리고 아동의 공동협력(partnership)과 참여를 촉구하였다(이양희, 2007). 국제사회는 아동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있음을 믿는다. 백년 전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겨졌던 아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자원이자 자신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창조하고 환경경영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 시민이 되었다(Unicef, 2002). 세계사회의 시민으로서 아동이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아동의 권리와 역량,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현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권리의 주체자로서 아동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변화는 아동권리협약 5조에 명시된 아동의 ‘evolving capacity’(계속 변화해가는 능력)이라는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 즉 국제적인 인권조약에서는 처음으로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므로 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이양희, 2007). 일생을 통한 인간의 능력발달과 변화는 개인적 잠재력과 환경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아동을 기대한다면, 아동이 특정연령에 도달하길 기다리기보다 아동이 속한 환경과 사회, 경제, 문화, 종교적 배경, 그리고 아동의 정신발달의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지닌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hildren’s participation, 2007).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두 가지의 보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즉 아동은 성인보다 힘과 능력이 부족하므로 특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억압받는 아동에게 더 많은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국제사회는 아동이 자기결정을 위해 보다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아동권리협약의 보호적 관점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self-protection)이 바로 아동기의 발달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에 근거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는 기본적인 시민권이며, 아동은 의사표현의 권리가 있다. 이제 아동은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창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hildren’s participation, 2007; Unicef, 2002).

2)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역량과 참여

보호주의 관점에서 성인에 의해 구축된 아동복지제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던 아동의 발언권이 확대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1973년 영국에서 시작된 ‘아동의 목소리 운동집단(Who Cares? Group)’은 전국적인 이용자 조직인 전국 아동협회로 발전하여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 중심의 자기옹호조직(self-advocacy organization)은 시설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문발행과 토론을 통해 의사표명권을 확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서비스와 그 전달과정에 참여하였다(김경호, 2003). 이후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기 위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와 필리핀에서 거리의 아이들(street children)을 대상으로 일하는 NGO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투쟁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Unicef, 2002). 아동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과 지역 사회환경을 조성(shape)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사회적 기업(social entrepreneurship)과 협회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또래를 교수(peer education)하는 등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다양하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선택과 의사결정, 독립성을 실행할 수 있는 책임과 기회를 갖는다. 아동의 사회참여는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의 기초가 되는 리더십을 함양하는 계기가 된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hildren's participation, 2007).

3) 아동의 시민성 향상

아동의 시민권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이후 발달과정에서 아동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된다. 시민성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삶, 교육, 정치적 인식을 통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된다. 따라서 아동이 타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해야 하며, 학교와 미디어, 스포츠, 문화에 접근할 기회를 통해 시민적 자

질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구미향, 1999;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hildren's participation, 2007).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아동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적 특수성을 포용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갈등을 해결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김영란, 2009; 신용주, 2006).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아동을 위해 국제사회가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모형을 제시하고 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II. 연구쟁점

1. 시민으로서의 아동

현대인들은 빈번한 교류와 정보화, 국제화 및 세계화를 통하여 '지구촌 시대(era of global village)'에 살게 되었다. 현재 인류는 경제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활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대미문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현재의 인류는 수많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즉, 다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개인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소통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박세일, 2001). 이러한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이며 공동체를 지향하는 창의적 리더

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미래 국제사회는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구촌화 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성장과 발달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이 주역이 될 미래 국제사회에서는 자유, 정의, 평등, 및 공동체 의식이 각 국가마다 실현되고, 사회 구성원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상호간의 차이를 조절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비판과 타협이 수용되며, 자율성의 원리가 구현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전득주, 1992).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의 사회이며 민주주의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다. 시민(citizen)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한다(The Britannica Encyclopaedia). 시민 권리(civil right)에는 개인의 자유(예 : 언론 및 정보의 자유) 및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가 포함된다(Unicef, 2002). 앞에서 언급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며 권리에 부합되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참다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미래 국제사회가 당면하게 될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아동의 성장과 발달시기에 대한 고민의 중요성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동이 개인의 자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과거 사회에서는 아동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의존적이고 일방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과거의 아동관에 근거하여 아동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아동은 단순한 약자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아동 권리실현 차원에서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21세기에도 아동의 지위변화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이러한 아동의 지위 변화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라는 대전제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도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주체라는 인식과 적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아동은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을 형성해 간다(Landsdown, 2001). 따라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아동은 발달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경험하고, 탐색하고, 질문하며, 상호작용과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학습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즉, 시민으로서 권리를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성인 사회기준에 의해서 아동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인류가 미래 국제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아동을 시민으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택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아동은 단순한 약자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아동 권리실현 차원에서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21세기에도 아동의 지위변화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이러한 아동의 지위 변화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라는 대전제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도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주체라는 인식과 적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아동은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을 형성해 간다(Landsdown, 2001). 따라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아동은 발달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경험하고, 탐색하고, 질문하며, 상호작용과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학습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즉, 시민으로서 권리를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성인 사회기준에 의해서 아동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인류가 미래 국제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아동을 시민으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2. 참여시민으로서의 아동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주요한 생활무대로 삼아야 할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의 삶의 방식이 실현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아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이 이러한 사회를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

서는 참여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Hart(1997)는 참여권을 ‘한 개인의 삶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참여의 경험을 통하여 아동은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홍승애, 200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은 의사표현의 자유(제12조), 표현과 매체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집회결사의 자유(제15조), 사생활 보장 및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제16조), 정보이용권(제17조), 휴식, 예술, 문화 활동을 즐길 권리(제31조)이다. 이 중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며 체계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공교육인 초·중등학교에서 민주적인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학생 참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참여권영역(교과영역 참여, 교과 외 영역 참여, 학습경영참여, 학교경영참여)에 대한 분류가 제안되었으며(田代高章, 2002),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아동이 참여주체로서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요인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연령 및 인지적/경제적 능력 차원에서 성인 기준을 적용할 때 아동은 미성숙하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현존하고 있다(김정래, 2002).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예: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에 대해서 아동 입장을 개진해 줄 수 있는 통로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성인사회

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아동의 참여권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는 아동이 발달시기를 거치면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발달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각 개인에게 존재하고 있는 개인차와 다양한 잠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이다.

시민으로서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경험을 통하여 아동은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수용과 배려와 함께 소통을 효율적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갈 수 있다(Hart, 1997). 이를 위해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아동은 탄생할 때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와 참여의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을 통해서, 가정/학교/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또래교육, 아동이 주도하는 단체 활동 등에 참여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능력기술과 경험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하며, 미래 국제사회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참여문화를 정착화 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1. 참여시민 양성을 위한 가정과 교육

국제사회는 참여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권리주체로서 사회와 인류의 공동의 선(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이다. 미래 국제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이러한 참여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라는 문제에 관한 실천적 모색이 필요하다. 참여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시작점은 가정이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활습관과 태도, 가치나 규범의 내재화를 주조화시킬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참여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인성교육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준비는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참여권 보장 및 실천 또한 가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한국가족은 이러한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신용주, 2006).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가정폭력, 가족해체 증가라는 현상은 참여시민에게 요구되는 도움주기, 나누기, 이타적 행동, 감정이입, 권리인식 등의 심리적 특성 보다는 물리적 안락 추구하고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추종하는 분위기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작지만 강력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희망은 있다. 그 희망적 역할의 주체는 부모이다. 부모는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살게 될 미래사회의 시대적 특징을 잘 전망하고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길러낼 수 있는 양육태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아동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익숙해진 참여경험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수행은 아동이 참여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있어 자양분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

한 부모역할 수행과 가족구성원, 친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모습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미래 국제사회를 지향하는 부모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영선·김현영, 2009; 홍경자, 2007).

아동이 참여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과 함께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 학습하는 일과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The Britannica Encyclopaedia).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념, 가치, 생활양식에 관한 전달과 재창조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과 가치는 아동이 참여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 조기교육이라는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문용린, 1990). 예를 들어 유아기부터 참여시민의 자질로 요구되는 가치관 교육, 교육적 경험, 의사결정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김영옥, 1990). 이러한 교육과정과 실시는 각 발달시기가 상호 연속성 상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학습방안에 토론, 역할놀이, 직접적인 체험 등의 형태로 제시되어 참여시민의 면모를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모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하여(예 : 인터넷) 참여시민교육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실천해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http://www.bbc.co.uk/scotland/education/as/citizenship>).

2. 참여시민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 친척, 이웃, 국가라는 여러 생태학적 체계에서 의미 있는 대

상과 상호 영향을 교류하며 발달한다. 아동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상태에서 대중매체, 문화적 가치, 법, 관습 등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아동이 참여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예 : 부모, 또래, 형제자매), 외체계(예 : 이웃, 확대가족, 법체계), 거시체계(예 : 정책, 정치적 환경, 대중매체)가 유기적이고 생산적인 영향력을 상호교류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맥락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정의감, 평등의식, 자율성, 다양성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교육하고 구현함으로써 아동을 참여시민으로 양성되도록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적 개성과 시민들의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아동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각 지역이 추구하는 토착적이며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도출시킬 수 있다(김현호, 2005). 이는 정의감, 평등의식, 자율성, 다양성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교육하고 구현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공공 프로그램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립방배유스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환경동아리, 인권동아리, 자원봉사단, 청소년참여변화기획단, 유해환경감시단 프로그램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이 권리주체자로서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참여권(participation)을 행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험을 통해 참여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에 놓이게 된다. 청소년 단체(Youth Group)의 움직임이 활발하도록 격려하

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발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부모, 성인, 이웃이 자율적으로 연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의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이 참여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한 참여시민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화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시민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된 지역사회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상호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아동을 참여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안동현, 2009; 김승권·박세경·황옥경·장보현·이진우, 2007). 첫째, 아동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한다. 둘째,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 시킨다. 셋째, 공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권리주체로서 참여에 관한 교육의 제공을 통해서 아동이 참여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를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기능을 강화시킨다. 넷째, 아동 친화적 환경마련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순차적이며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안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3.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다방면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교

류하는 지구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세계시민은 평등의식에 기반 하여 정의의 실현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자기결정과 의사표현을 효율적으로 구사하며, 미래 지향적인 지식/가치/태도를 지니고, 인류가 함께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시민 이어야 한다(김영란, 2009; 홍선희, 2006; 허영식, 2006). 이것이 미래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이다. 아동이 참여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가정, 교육, 지역사회, 국가 모두 합심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국제사회의 참여시민은 개별국가의 한 국민이면서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가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며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인류가 인권, 빈곤, 환경파괴, 무력분쟁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시민성을 발휘하여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아동과 국제사회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미향(1999). 영아기 애착관련 변인과 모성행동특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기독교뉴스(2008. 6. 4). 전세계 분쟁지역, 아동 성학대 여전해.
 김경호(2003). 영국의 아동복지 이용자 조직의 참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9(2), 43-64.
 김승권 · 박세경 · 황옥경 · 장보현 · 이건우(2007). UN아동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사업연구. 서울 : 보건복지부.
 김영란(2009). 시민성향상을 위한 리더쉽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1990). 민주시민의식 배양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인간발달연구, 18, 57-88.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 교육과학사.
 김현호(2005).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지원방안. 서울 : 한국학술정보.
 문용린(1990). 유아시기의 민주시민 교육. 인간발달연구, 18, 37-56.
 박세일(2001). 21세기의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 제 2세대 개혁의 기본방향. 국제지역연구, 10(1), 1-27.
 세계일보(2009. 8. 10). 해수면 2100년까지 1m 상승.
 신용주(2006).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시민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1, 65-74.
 안동현(2009). 한국 아동의 삶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집, 265-284.
 이태일리(2009. 8. 4). 세계 각국 포스트교토의정서 준비 한창.
 이양희(2007).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의 방향. 한국아동권리학회 10주년 발표자료.
 장준호(2006). 세계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구조. 정치사상연구, 12(1), 81-151.
 田代高章(2002). 아동 참가의 권리연구의 도달점과 과제. 아동권리조약종합연구소, 창간호, 11-17.
 전득주(1992). 현대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평민사.
 정영선 · 김현영(2009). 청소년을 위한 학습상담. 서울 : 시그마프레스.
 허영식(2006). 지구촌 시대의 시민교육. 서울 : 학문사.
 홍경자(2007). 부모코칭 프로그램. 서울 : 학지사.
 홍선희(2006).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승애(2004).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pstein, I. (2006).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The promise and limitations of multilateralism as a means of protecting children*.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Hart, R.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 UNICEF.
-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hildren's Participation (2007). *Children as active citizens.* Bangkok.
- Landsdown, G. (2001). *Promot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Democratic Decision Making.* Florence, Italy : UNICEF.
- Lee, Y. (2009). Child rights, child well-being and child poverty. In J. Doek, A.K. Shiva, Kumar, D. Mugawe & S. Tsegaye (Eds.), *Child poverty: Afric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pp. 17-26). Antwerp, Oxford, Portland : Intersentia.
- Lee, Y. (2008). www.ohchr.org/english/bodies/crc/docs/Oral_statement_GA_63.
- Unicef (2009).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children.* Conference report. 6-7, January. Singapore.
- Unicef (2007). *Climate Change and Children.* 3 United Nations Plaza: New York.
- Unicef (2002). *A world fit for children.* 3 United Nations Plaza : New York.
- [http : //www.bbc.co.uk/scotland/education/as/citizenship](http://www.bbc.co.uk/scotland/education/as/citizenship).

2009년 8월 16일 투고, 2009년 11월 1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